

의안번호	2204045
의 퇴 인	송옥주의원
회 답 일	2024.11.14.
추 계 번호	24B382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점검)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제3항)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제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조치사항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한 점검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조치사항의 보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함(제4항) 제4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함(제5항)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조치명령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제6항)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 및 점검, 조치명령, 이행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7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점검)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2. 상세 사유

-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와 조치사항을 3년간 기록·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함¹⁾
-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의 의무 사항이지만 평가의 미실시나 부적정 실시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는 상황
 - 이에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확대하기 위하여 컨설팅 및 인센티브(산재보험료 감면 등)를 지원²⁾하고 있고, 안전보건관리 역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을 위한 컨설팅도 지원³⁾하고 있음
 - 또한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산업안전보건)」은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및 그 적정성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업장에 대해 점검하고 있으며(제18조제1항), 감독관의 사업장 방문을 통한 위험성평가 확인(별표 1)과 감독점검표 작성을 통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적정성에 대한 점검과 지도 사항 검토(별지 제2호서식) 등을 수행하고 있음

□ 개정안은 사업주로 하여금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하여금 사업주가 제출한 위험성 평가의 적절성 여부를 점검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개정안은 위험성평가에 대한 점검 결과 산업재해의 위험 등 개선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하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개정안의 시행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매년 1회 사업주가 제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조치사항이 적절히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보완조치를 명하며, 조치명령의 이행여부를 확인해야하므로, 개정안

1)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3)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사업 예산은 업종별 재해예방 사업 중 ‘사고사망 핵심 고위험요인 집중관리’(내내역)의 기술지원 사업으로 수행

의 시행에 따라 지지방고용노동청 인건비 및 기관경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개정안은 평가 및 점검, 조치명령, 이행명령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가 없으므로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장래에 발생할 위험성 평가 점검 건수, 조치명령 이행률, 이를 위해 필요한 근로자 수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현시점에서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의 산출이 곤란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